

## 제33차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시행

### - 대(對) 러시아, 벨라루스 상황허가 대상품목 1,159개로 확대 및 제도 개선 -

국제사회는 '22년 2월 24일 러-우 전쟁 발발 이후 평화적 해결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수출통제 강화조치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이러한 對러/벨 수출통제에 동참하고 있으며, 전쟁 장기화로 인한 상황허가 품목 확대를 위하여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이 '24년 2월 24일부터 시행 될 예정입니다. 이에 주요 개정이유 및 개정내용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I. 개정 이유

- 러-우 전쟁 장기화로 미국, EU, 영국, 일본 등 주요국은 기존의 무기 관련 품목 뿐 아니라 일반산업용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 통제를 확대하고 있으며, 우방국의 동참을 요청함
- 이와 관련하여, 그동안 국제사회와 對러/벨 수출통제 조치를 긴밀히 조율해 온 우리 정부는 기존 798개 對러/벨 상황허가 품목을 1,159개로 확대

#### II. 주요 개정 내용

##### 1. 對러/벨 수출통제 품목 확대

- (상황허가 대상품목 추가) 국제사회 對러 수출통제 공조를 위해 무기 전용 가능성이 높은 품목 추가 <별표2-2>

개정 전 798개	개정 후 1,159개
(현재) 전자, 조선, 산업·건설기계, 석유·가스 정제장비 등	(신규) 철구조물, 항공기부품, 건설중장비, 운반하역기계, 차량용 배터리, 이차전지 등

- (통제기준 변경) 기존 품명·기술사양·금액 기준에서 품명·기술 사양 및 HS 6단위 코드, 배기량 기준(승용차)으로 변경

품목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전략물자 관련 품목	품명 (기술사양)	품명 (기술사양)
일반산업품목		HS 6단위 코드
승용차	미화 5만불 초과	배기량 2,000CC 초과

- (허가 지침 신설) 그간 가이드라인 형태로 운영하던 對러 전략물자 및 상황허가 심사기준을 고시상 지침으로 명문화 <별표24>
  - \* 전략물자 ⇒ 거부 / 상황허가 ⇒ 원칙적 거부 및 사안별 심사  
사안별 심사대상 : 고시 시행 전 既계약분 수출, 100% 자회사向 수출 등

## 2. 제도 개선

- 포괄허가(산업용)를 받아 수출을 한 후 군용으로 사용됨을 알면서도 수입국 내 거래를 한 경우 허가 취소\* 근거 마련 <33조 2항 및 39조 2항>
  - \* 다만, 방사청과 허가의 효력을 유지하는 것으로 협의를 마친 경우 예외
- KOICA의 해외 긴급구호에 대해 허가 면제 근거를 신설, 전쟁 및 자연재해 등 비상상황 발생시 신속 지원 추진 <26조 1항 4호>
- 원자력전용품목 박람회 등 출품시 허가 면제 적용 <26조 1항 8호>
- 원자력전용기술 허가면제 대상국을 규제완화국(20개국)에서 협정 체결국(29개국)으로 확대 <별표 13-2>
  - \* NSG 未가입국이나, 우리와 양자 원자력협정을 체결한 UAE, 사우디 등 9개국 대상 면제 확대

## III. 對러시아/벨라루스 수출 시 유의사항

- 상황허가 대상 품목의 對러시아·벨라루스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사안별 심사(case by case review)를 통해 허가 여부가 판단됨
  - \* 예외 case : ① 고시 시행 전 既계약분 수출시, ②100% 자회사向 수출시 등

- 고시 개정에 따라 상황허가 대상품목, 통제기준 및 통제번호 등이 변경되므로 **기존에 발급받은 상황허가 대상품목 판정서는 유효하지 않음.**

따라서, 기존에 발급받은 자가판정서 또는 전문판정서는 고시 개정일 즉시 유효기간이 만료되므로 새롭게 판정서를 발급받아야 함.

\* (관련 규정)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16조 : 통제품목의 통제기준 강화, 완화, 통제번호 변경 등 통제기준이나 통제번호에 실질적 변경이 있는 경우 그 개정 고시일에 해당 전문판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

## IV. 시행일

- '24.02.24(토)

## | 첨부자료

[\[붙임 1\] 제33차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에 따른 러시아 벨라루스 수출통제 이행 가이드라인\(2024\)](#)

[\[붙임 2\] 산업통상자원부 기업 설명회 발표자료](#)

[\[붙임 3\] 대러시아·벨라루스 상황허가 품목 HS코드 연계표\(고시 별표2의2\)](#)

[\[붙임 4\] 무역안보정책과, 제33차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시행](#)

[\[붙임 5\] \[별표 24\] 국제사회 수출통제 공조를 위한 러시아, 벨라루스 허가 지침\(전략물자 수출입고시\)](#)

## | Contact



강민주 관세사 / Director

T 02-6011-3035  
E mjkgang@esein.co.kr



장수한 관세사 / Senior Manager

T 02-6011-3091  
E shjang1@esein.co.kr



김재우 관세사 / Senior

T 070-4353-1522  
E jwkim@esein.co.kr



| 세인 홈페이지 | Newsletter 더보기 | 구독신청 |

세인관세법인의 뉴스레터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 공식적인 견해나 법률의견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세인관세법인의 홈페이지 또는 위의 컨설턴트에게 연락하시어 확인 바랍니다.

The newsletter of SEIN Customs & Auditing Corp. is published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general information and does not include any official views or legal opinions. For more details, please check our website or contact the consultants mentioned above.

Copyright 2024 SEIN Customs & Auditing corp. All rights reserved.